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7
----------	-----

2014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1월 7일, 김광수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김광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 대비 2배 이상 장기로서 경쟁 없는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선정방식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제한 조항을 폐지함(안 제7조)
-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같은법 시행령에 별표로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 영 배)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영업구역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체선정방법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

나. 검토의견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구역 제한 삭제(안 제7조)

-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업체의 평균 계약 기간은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 대비 2배 이상 장기로서, 경쟁 없는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표 1〉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균 계약연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
업체수	117	34	39	62	8	13	22	184	639
평균기간(년)	27.6	14.8	5.0	10.6	15.3	9.9	9.2	11.0	11.2
최장기간(년)	41.0	31.6	14.5	29.0	22.0	26.6	26.6	39.3	41.0

-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방법의 원칙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위한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서비스제안서 평가를 통한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으나¹⁾,
- 본 조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1) 기자설명회 자료, 서울시,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으로 서비스 질 강화', 2014. 10.29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과태료 부과 관련(안 제13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²⁾에 따르면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과태료 금액이 달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음.
-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한 바 있어, 본 조례에도 그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하며”를 “시행령 별표 8과 같으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시장은 법 제25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시 영업구역은 당해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전지역으로 제한한다.</p>	<p><삭제></p>
<p>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u>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u>」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하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제13조(과태료 부과 등) ----- ----- ----- <u>시행령 별표 8과 같으며,</u> ----- ----- -----.</p>